2024년 강남구, 건강걷기체험 교육행사 운영과 업내용서



과 업 내 용 서

1. 과업의 명칭

○ 본 과업의 명칭은 "2024년 강남구, 건강걷기체험 교육행사 운영" 이라 한다.

2. 과업의 목적

○ 본 과업은 500명 내외 주민들이 건강건기와 같은 건강생활 실천을 직접 수 행하여 혈액변인과 같은 실중적인 개선 수치를 직접 확인함으로써, 일상 속 건강생활습관의 중요성을 인지시키는 성공적인 체험행사 운영임

3. 과업의 개요

○ 과 업 명 : 2024년 강남구, 건강걷기체험 교육행사 운영

○ 수 행 일 : 2024년 10월 04일(금), 13:00~18:00

○ 사 업 비 : 금22,000,000원(금이천이백만원) ※VAT포함○ 행사위치 : 양재천 수변부 영동3교 북단 다리 밑 광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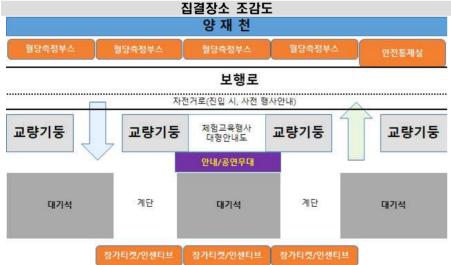


메인행사장

○ 과업내용



교육장 설명 - 양재천 수변부 약 6km 구간을 축소한 이미지(스탬프 6개 위치 포함 및 부스 운영 장소 포함)



집결장소 설명 – 첫 출발지이자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장소로서, 특히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가장 큰 장소임으로 철저한 준비 필요

가. 강남구 건강걷기 체험행사 운영 및 총괄 기획

- 총괄 기획, 연출 및 운영(지정 걷기 코스 내 설치물, 행사디자인, 교통, 안전, 인력우영 계획, 물품 유송, 유도 장비, 테이블, 부스 등 설치운영)
- 참가자 전후 혈당 측정 및 측정 데이터 관리
- 행사 안전 관리(보험가입, 안전요원, 안전장비 등)
- 행사 진행요원 관리(코스 별 안내, 신청 접수인원 등)
- 행사 구간별 스탬프(6개) 운용
- 건강부스 섭외 및 원활한 운영 지원금 지급 ※ 건강부스 섭외 및 선정은 발주기관의 담당자의 허가 필요 (제한사항: 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컨텐츠 또는 주민 대상 영리적 금전요구 등)

나. 행사 시설 및 부대 비품 장비 운용

- 무대장치, 설계, 장치 및 장식물, 조명, 음향, 특수효과 장치, 행사장 안전 장치 및 유도 장비, 테이블 등 설치 운용
- 행사 참가자 달성 인센티브 물품 관리
- 행사 안전, 진행 요원 인식 의상(약50명)
- 행사에 필요한 기타 제반 물품

다. 기타 본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수반되는 모든 제반 사항

- 자금집행계획서, 결과보고서, 원가정산보고서 등 제반 문서
- 후원 및 스폰서 (현금, 현물 협찬 유치 및 관리)
- 성공적 행사 운영을 위한 제반 활동

4. 과업수행

○ 일반사항

- 가. '계약상대자'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,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,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.
- 나.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적,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

처리는 '계약상대자' 가 부담한다.

- 다. '발주부서'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내용 등이 과업 목적 달성에 지장이 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교체(변경)를 요구할 수 있으며, '계약상대자'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라. 본 과업 내용에서 명시되지 않은 시항이나,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, '발주부서'와 '계약상대자' 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- 사업 사전보고 및 숭인
- 가: '계약상대자'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'발주부서'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.
-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
- 가. '계약상대자'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한 사업 전체 결과보고서를 과업종 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 '발주부서'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혐의하여 제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.
- 보고서 포함 내용 : 행사 개최 결과, 행사 사진 또는 동영상, 기대효과, 개선 내용 분석
- 지도감독
- 가. '발주부서'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'계약상대자'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.
- 나. '발주부서'는 필요한 경우에 시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,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'계약상대자'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및 평가할 수 있으며, '계약상대자'는 이에 따라야 한다.
- 손해배상 등
- 가. '계약상대자'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만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, '계약상대자'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.
- 계약의 해지 등
- 가. '발주부서'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'계약

상대자'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.

- 나. '계약상대자'가 과업 수행 중,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'발주부서'가 인 정하였을 경우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.
- 대금 청구 및 회계처리
- 가. '계약상대자'가 과업 종료 후, '발주부서'로 결과보고서 제출이 확인된 이후, 대금청구서에 근거한 회계처리를 진행한다.
- 나. 천재지변 및 사회적 통념상 이해가 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른 과업 취소 시, '발주부서'와 '계약상대자'협의 하에 수행준비 중 발생한 집행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.

5. 유의사항

- 본 과업수행 중에 발생한 성과물 및 내용은 주최 '발주부서'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,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는 본 과업과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.
-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'발주부서'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행한다.
- 이 내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'발주부서'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